

[별표 3] <개정 2015.7.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 분	규 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관 광 농 원 사 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농 어 촌 민 박 사 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설기준

구 분	시설의 종류	시 설 기 준
농 어 촌 관 광 휴 양 단 지 사 업	농어업전시관 (기 본 시 설)	○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학 습 관 (기 본 시 설)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관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지 역 특 산 물 관 매 시 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 육 시 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 양 시 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시설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관 광 농 원	영농체험시설 (기 본 시 설)	○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사 업	지 역 특 산 물 판 매 시 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 육 시 설	○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 양 시 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음식물 제공시 설	○ 영 제84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기 타 시 설	○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기 본 시 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농 어 촌 민 박 사 업	조 식 제 공 시 설 (조 식 을 제 공 하 는 경 우 에 만 해 당)	가.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어 나.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추어 다.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 것.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수도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것
		※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외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